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 및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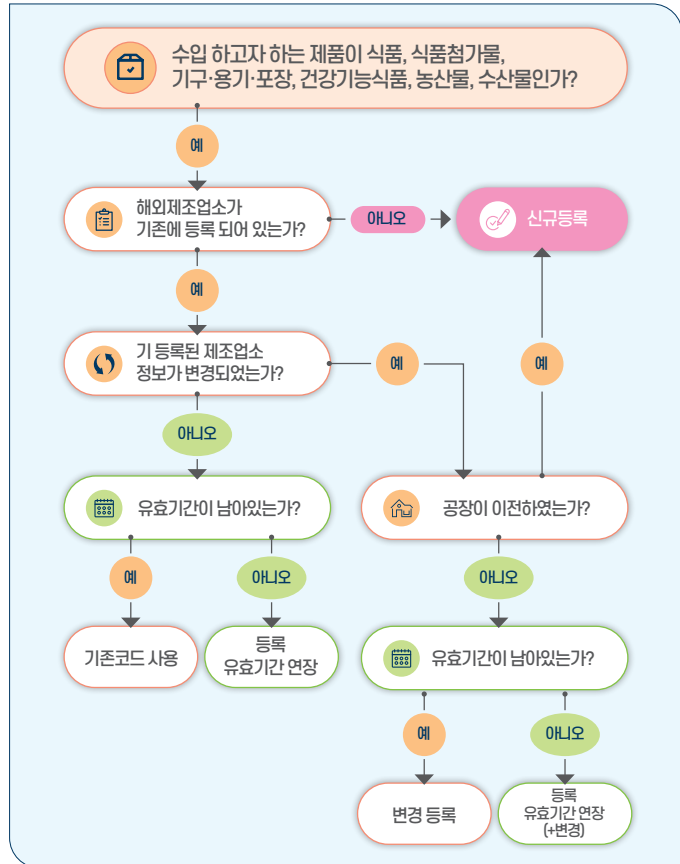
● 등록신청

-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 접속(<https://impfood.mfds.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① 전자민원 → ② 민원신청 바로가기 → ③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 (처리기간: 3일)

● 해외제조업소 등록 사항

- ▷ 해외제조업소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 ▷ 생산품목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 참고(단, 기구·용기 또는 포장의 경우 재질을 등록)
- ▷ 영업의 종류
- ▷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여부

● 해외제조업소 등록 흐름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FAQ

Q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 제품의 소비기한(제조일자) 설정 및 품질관리 등 최종 제품의 제조공정이 완료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함

Q 수입제품의 제조공장이 A제조업소와 B제조업소에서 제조공정을 나눠서 생산할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 하나의 제품을 여러 업소에서 제조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은 해당 제품을 실제 제조·공정을 하는 곳이며 최종 제품의 포장이 완료되고 제조일자 및 소비기한 설정, 품질관리 등 제품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Q 병입 장소가 매번 변경되는 와인의 경우 해외제조업소는 어디로 등록해야 하나요?

▷ 주류의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최종 병입하는 장소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류의 브랜드명(상표명)으로 등록은 불가함
▷ 다만, 병입 장소가 매번 바뀌는 와인 제품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제조업소 측 공문이 첨부되는 조건으로 원액을 제조·생산하는 시설을 해외 제조업소로 등록 가능

생산년도가 오래되어 제조업소가 폐업된 와인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사가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와이너리가 해외제조업소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 와이너리를 해외제조업소로 등록 가능

Q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하여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허위 수입신고에 해당되나요?

▷ 타인이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위 수입신고에 해당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
▷ 따라서 모든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함

Q 병행수입의 경우 해외제조업소의 정보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부터 관리하는데 그 취지와 목적이 있음 따라서, 병행수입을 통해서 식품 등을 수입하더라도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여야 함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해외제조업소 등록제 안내



해외제조업소 등록

●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 포함)

해외작업장 등록 수입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인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상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한 해외작업장 등록 대상임

● 해외제조업소 등록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 까지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품목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유효기간: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수출국 정부를 통한 등록대상 (*25. 5월 기준)

- 수산물 위생약정국(11개국), 특별위생관리식품(28개국)
- 동물성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타조고기, 타조의 알)

● 해외제조업소 신규등록

수입된 이력이 없는 업소를 새롭게 등록(유효기간 2년)

● 등록신청 구비서류

- 1 수출국 공장확인서류*
 - *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소명, 소재지 정보 등이 포함된 영문 서류)
- 2 수출국 공장확인서류가 제2외국어인 경우 공증번역본 또는 해외제조업소 공문(영문, 해외제조업소 직인 또는 수기서명 등 포함)
- 3 수출국 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주의사항

-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공장을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업소명과 소재지로 등록
-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취소되며,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 대상임
- 한 회사에서 여러개의 공장을 소유하는 경우 각각의 공장을 개별적으로 등록

해외제조업소 변경/유효기간 연장 등록

● 변경등록

기존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 ▶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해외제조업소 공문 등 추가 서류 필요)
 - 해외제조업소명, 소재지(행정구역 명칭변경에 한함), 대표자 변경 등
 - * (그외) 영업의 종류(식품·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제조·가공 등), 생산 품목,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등 변경등록 가능

☑ 주의사항

- 공장이 이전(위치변경)한 경우 변경이 아닌 신규등록 대상임
- 기존에 등록된 해외제조업소가 수출업소(유통·무역회사 등) 등 잘못된 정보로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이 아닌 등록취소 대상임
- 수산물 약정시설, 특별위생관리식품 및 동물성 식품의 제조업소명 등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국가를 통해 변경 가능함

● 등록 유효기간 연장 등록

해외제조업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 필요

☑ 주의사항

- 해외제조업소 유효기간 연장 등록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신청 가능
- 등록 정보(업소명·소재지·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변경·유효기간연장 신청 구비서류

- 1 수출국 공장확인서류*
 - * 해당 수출국의 식품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업소명, 소재지 정보 등이 포함된 영문 서류)
- 2 수출국 공장확인서류가 제2외국어인 경우 공증번역본 또는 해외제조업소 공문(영문, 해외제조업소 직인 또는 수기서명 등 포함)
- 3 수출국 제도 체계상 별도 인허가가 없는 영업인 경우에 한해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대신할 수 있음
- 4 등록된 정보를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민원의 경우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공문*
 - * 주요 변경 내용 및 제조시설이 이전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공문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참고사항

●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참고사항

- ▶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 우측 배너 '알기쉬운 수입신고 해외제조업소 등록 안내서' 클릭
- ▶ **수출국발행증빙서류 샘플양식 확인**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impfood.mfds.go.kr>) → 알림자료 → 공지사항 → '해외제조업소' 검색 →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련 국가별 제출서류 참고
- ▶ **생산품목(식품유형) 확인**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 전문정보 → 기준·규격정보 > 공전

● 해외제조업소 등록취소 주요사유

- ▶ 해외제조업소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변경·유효기간 연장)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실제 제품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수산물은 선박을 포함)하는 시설이 아닌 수출회사(유통·무역회사 등 포함)로 확인된 경우
 - * 제조업소 폐업 및 소재지 이전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중단된 경우
 - ▶ 해외제조업소 정의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시설이 아닌 경우 등)
 - ▶ 제조업소 실사 결과 확인 사항에 따른 처리
 - * 확인사항: 실제 제조업소가 아닌 수출업소, 공장 소재지 이전(위치변경), 폐업으로 인한 미운영 등
-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어 취소된 해외제조업소의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한 수입자 등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자격 제한

☑ 당부사항

- 실제 제조시설이 아닌 곳을 해외제조업소로 등록 한 경우 등록취소 대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정보가 실제 제조시설 인지 한 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한 경우에도 허위수입신고*에 해당하므로 모든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 구비서류 미흡·보완등의 사유로 등록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해외제조업소 등록(유효기간 연장)을 먼저 완료하신 후 제품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제조업소 등록(신규 및 변경),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문의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1811-64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